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40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2

제4403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44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제440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

제4406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3

제4407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제440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6

제4409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8

제4410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4

제441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36

제4412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2

제4413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8

제4414호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0

제4415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4

제4416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9

제441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5

제4418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100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단서를 삭제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

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해 감사·조사·평가 관련 장소·사무기기 제공 외 불필요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독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으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 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 을 “이 규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 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금품·향응수수”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20. 4. 7. 공포, ' 20. 5. 27. 시행) 내용(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20. 5. 11. 공포 및 시행) 및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제27조).

(1)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2) 사전신고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나. 「공무원 행동강령」 중 규칙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5조의2 신설).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26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각각 신설).

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사항을 반영함.

(1)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시기를 구체화함(제8조제1항).

(2)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사실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함(제23조제4항 및 제5항).

라. 그 밖에 용어 정의 및 중복기준 삭제 등 조문 내용을 정비함.

(1) (용어 정비) '단위기관' 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규정하여 실·국·본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지양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통일함(제2조).

(2) (중복기준 삭제)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 양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르면서, 규칙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 별표를 삭제함(별표 삭제).

(3)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조항 삭제) 규칙은 시의회의원을 제외한 단위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단위기관별로 세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제4조 삭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3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택시물류과 사무명란 제2호 중 “운송부대시설변경” 을 “차고 등 운송부대시설변경” 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승차거부처분권한은 제외)” 를 “(승차거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로 하며, 같은 란 제11호 중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를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로 한다.

같은 표 택시물류과 사무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의 근거법령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으로 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생활환경과 사무에 제3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별지]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생활환경과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나. 같은 법 제39조 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 조치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법 제39조	구청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에 위임된 일부 사무를 구로 재위임하고, 자치구로 위임된 일부 사무를 시로 다시 환수하여 우리 시 기관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사무명과 근거조문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재활용)과 관련한 사용계획서의 접수·통보,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등의 사무를 자치구에 재위임함(별표 기후환경본부).
- 나. 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및 일반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시로 다시 환수함(별표 도시교통실).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19.3.19.)에 따라 택시물류과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현행화(별표 도시교통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
- 라.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사무와 관련하여 ‘운송부대시설’ 에 ‘차고’ 를 포함하여 명시함(별표 도시교통실).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9호 중 “교통방송” 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21호를 삭제한다.

- 20. 시민 미디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항제3호 중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등 다른” 을 “다른” 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 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를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재)서울문화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 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 18.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 1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
- 20. 악취배출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21. 소음·진동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3항에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시행계획 수립
- 31. 물산업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3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3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계획 수립
- 34.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제23조의2제5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관리 및 지도·감독

제7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7조제3항제4호 중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을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딜쿠샤 전시관” 으로 한다.

제133조제3항제1호 중 “공원조정계획” 을 “공원조성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부서 간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 사무 조정

-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 미디어 지원’ 등 사무 추가 및 조정(제6조)
- (2) 기획조정실 사무 조정(제10조)
 - ▶ 대외협력담당관 → 조직담당관(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무)
- (3) 문화본부 사무 조정(제14조 및 제97조)
 - ▶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과(서울문화재단 지도·감독)
 - ▶ 역사문화재과 → 서울역사박물관(딜쿠샤 전시관 관리·운영)
- (4) 기후환경본부 사무 조정(제15조)
 - ▶ 생활환경과 → 환경정책과(소음·악취·유기화학물질 관리)
 - ▶ 자원순환과 → 생활환경과(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5) 물순환안전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서울물재생 시설공단 위탁관리’ 등 사무 추가 및 조정(제23조의2)
- (6)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용역, 정원 외 인력관리 사무 삭제 (제133조)

나.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장(5급)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한 단서 조항 삭제(제79조제3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 중 5급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환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환경또는공업란 다음에 행정·환경또는녹지, 행정·환경또는수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또는녹지	12	6			6	
--------	----	---	--	--	---	--

행정또는환경	3	3				
--------	---	---	--	--	--	--

행정·환경또는녹지	1	1				
-----------	---	---	--	--	--	--

행정·환경또는수의	1	1				
-----------	---	---	--	--	--	--

같은 표의 6급 소계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447	1,829	106	106	1,293	113
-------	-------	-------	-----	-----	-------	-----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6	12			14	
-----------	----	----	--	--	----	--

같은 표의 7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녹지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408	1,353	111	145	1,737	62
-------	-------	-------	-----	-----	-------	----

행정	1,270	701	81	59	384	45
----	-------	-----	----	----	-----	----

전산	129	77	5	9	37	1
----	-----	----	---	---	----	---

녹지	80	11		2	67	
----	----	----	--	---	----	--

기계운영	82	5	1		76	
------	----	---	---	--	----	--

같은 표의 8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보건란, 위생란, 운전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374	189	48	71	1,063	3
-------	-------	-----	----	----	-------	---

행정	164	31	15	16	101	1
----	-----	----	----	----	-----	---

공업	110	7	1	5	97	
----	-----	---	---	---	----	--

보건	8	2			6	
----	---	---	--	--	---	--

위생	11	2	1		8	
----	----	---	---	--	---	--

운전	104	18	3	12	71	
----	-----	----	---	----	----	--

기계운영	135	2	2	1	130	
------	-----	---	---	---	-----	--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대응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덜쿠샤 전시관 운영 전문성 제고,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재배치함 (8명).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6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늘어난 사업” 을 “증가” 로, “제외한다.) 다만” 을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본문 중 “30퍼센트” 를 “100분의 30” 으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년” 을 “4년” 으로 하여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자체재원의 100분의 60(자치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채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 20. 11. 1. 시행)되어 재심사 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규칙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가 종료된 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방채 발행액이 자체재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함(제4조제3호).

나.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던 규정을 4년 이상으로 변경함(제4조제4호).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7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 을 “추정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재정운용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으로, “추정대차대조표중” 을 “추정재정상태보고서중”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을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정책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로, “협의 및 승인을” 을 “협의를”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금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를 “기금결산보고서”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규칙의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를 넘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주요 항목을 ‘정책사업’ 으로 구체화하고 10분의 2 범위를 넘는 경우부터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도록 함(제17조).
 - 나. 기금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조례 개정에 따라 첨부되어야 할 ‘추정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재정운용보고서’ 로 변경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함(제16조).
 - 다. 기금결산 시 기금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서 「지방회계법」상 작성대상이 아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삭제함(제18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 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 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20.12.)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관부서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제9조의2).
- 나.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 이동사항 반영(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409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을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으로 한다.

제2조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 제26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7호까지, 제23호부터 제31호까지, 제33호부터 제34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39호까지로 한다.

제2조에 제8호,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이 만족해야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
- 19.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 20. “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 21.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
- 22.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 3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 정보의 암호·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2조제23호(중전의 제17호), 제30호(중전의 제24호) 및 제34호(중전의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보안적합성 검증” 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 30. “암호자재” 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된다.
- 34. “검증필 암호모듈” 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

제2조제36호(중전의 제30호)다목 중 “산업기술을” 을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7조의 제목 “(정보보안내규 제정)” 을 “(정보보안내규)”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준용” 을 “적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요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 을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을” 을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로 한다.

제1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보안대책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보안 준수 사항

제15조제1항제15호 중 “원격근무시스템” 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제23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제2장제3절의 제목 “사업 수행” 을 “제품 도입” 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호·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의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 ②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2.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성능평가서를 발급받은 제품: 성능평가서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만료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증 또는 평가기관이 제품의 보안기능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연장
 3.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검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4. 제1항제2호의 제품: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 ③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정부정책·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등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본래의 등재 기간을 적용한다.
- ④ 각급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제품의 등재 증지와 관련하여 공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인증서, 성능평가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 3. 제품의 명칭·버전·소스코드(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어 제품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 4. 제품이 안보 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 5. 제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제품 등재 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재 재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상용 암호모듈 도입시 고려사항)” 을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는 암호모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검증필 암호모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목록 등재 중지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내용을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암호모듈의 명칭·소스코드(일부 또는 전부)·해시값이 무단 변경되어 제품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 2. 암호모듈이 안보 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 3. 암호모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모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통보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암호모듈 등재 중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등재를 재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시 고려사항)” 을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입·운용하고자” 를 “도입하고자” 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제3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제3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 앞에 “제4절 계약 및 사업수행” 을 삽입하고, 제32조(중전의 제30조) 앞에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을 삽입한다.

제38조(중전의 제37조) 앞에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를 삽입한다.

제42조(중전의 제41조) 앞에 “제4장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를 삽입한다.

제46조(중전의 제45조) 앞에 “제5장 훈련 및 평가” 및 “제1절 훈련 및 진단” 을 삽입하고, 제 48조(중전의 제47조) 앞에 “제2절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를 삽입한다.

제50조(중전의 제49조) 앞에 “제6장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및 “제1절 보안관계” 를 삽입 하고, 제58조(중전의 제57조) 앞에 “제2절 사고 대응” 을 삽입한다.

제61조(중전의 제60조) 앞에 “제7장 정보 협력” 을 삽입한다.

제65조(중전의 제64조) 앞에 “제8장 보칙” 을 삽입한다.

제24조(중전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도입현황 제출) 시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증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5조)제1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제1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제26조(중전의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7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4.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제1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같은 지침 제1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⑤ 시장은 소속·산하 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제1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각급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제1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 중 “제45조 및” 을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 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2장제4절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위규자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업무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중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검증대상 제품)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1조)의 제목 “(검증 신청)” 을 “(검증 기관 및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시 소속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기타 각급기관은 서울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시장에게 별표 3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중전의 제32조)제1항 중 “제31조” 를 “제33조” 로, “검증 결과” 를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결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품의 보안기능 보완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를 “검증결과를” 로 한다.

제35조(중전의 제3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37조(중전의 제36조)제2항 중 “통보” 를 “요청” 으로 한다.

제42조(중전의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 을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 을 “보호지역” 으로 한다.

제44조(중전의 제43조)제2항 중 “업무 연속성” 을 “재난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 으로 하고, 제45조(중전의 제44조)제3항 중 “통보하고” 를 “통보하여야 하고” 로 한다.

제47조(중전의 제46조)제1항 중 “해당” 을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2.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
- 3.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제52조(중전의 제51조)제4항 중 “「국가정보자료규정」 제2조제1호” 를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58조(중전의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5조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을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공공 전용(專用) 클라우드” 를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로, “공공 전용(專用) 클라우드에서” 를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에서” 로 한다.

제59조(중전의 제58조)제1항 중 “별표 3” 을 “별표 4” 로 한다.

제61조(중전의 제60조) 중 “제58조제1항” 을 “제59조제4항” 으로 한다.

제63조(중전의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이용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② ①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
 - 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운영
 - 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
 - 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
 - 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활용
 -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제64조(중전의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자료규정」 제2조제1호” 를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1조 관련)” 을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58조 관련)” 을 삭제하고 별표 4로 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을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제품 유형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검증필 암호모듈
	CC인증 1)	성능평가 2)	보안기능 확인서 3)	보안적합성 검증 4)	
스마트카드		X	X	○	X
침입차단시스템		X		X	X
침입방지시스템		X		X	X
통합보안관리제품		X		X	X
웹 방화벽		X		X	X
운영체제 (서버) 접근통제제품		X		X	X
DB접근통제제품		X		X	X
네트워크접근통제제품		X		X	X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X		X	X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국가용 보안요구사 항	X		X	X
무선랜 인증제품		X		X	X
가상화제품(Hypervisor)	또는	X		X	X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	국가용 보호프로파 일(PP) 준수	X		X	X
디지털복합기		X		X	X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X		X	X
스팸메일차단시스템		X		X	X
패치관리시스템		X		X	X
망간자료전송제품		X		X	X
DDoS 대응장비		X		X	X
안티바이러스제품		X		X	X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X		X	X
가상사설망제품		X		X	탑재 필요
호스트 자료유출방지제품		X		X	탑재 필요
S/W기반 보안USB제품	X	X		X	탑재 필요
가상화관리제품	X	X		X	X
네트워크 장비 5)	X	X		X	X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인증(국내용 CC 또는 국제용 CC). 다만, 인증범위(TOE)에 각급기관이 사용할 보안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 3) 시험기관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보안기능 시험결과에 대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협의하여 발급하는 확인 증서
 - 4) 본 지침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 5) 네트워크 장비는 L3 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 등을 의미
- ※ 다수 H/W에 탑재, 배포되는 제품이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에 H/W 모델명 기재 필요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의 목록 등재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고

【 별표 2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품 유형	도입 요건	비 고
메일 암호화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구간 암호화제품		
하드웨어 보안토큰		
디스크·파일 암호화제품		
기타 암호화제품		
SSO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및 CC인증(국가용 보호프로파일 준수)	
DB 암호화제품		
문서 암호화제품(DRM 등)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장비	작성 주체
	상용 제품	자체(용역) 개발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	○	○	
보안기능 점검표	○	○	○	
운용점검사항	○	○		
CC인증서 사본	○ (인증서 보유시)			업체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	○	○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	
기본 및 상세 설계서		○		
개발완료 보고서		○		

2. 재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장비	작성 주체
	상용 제품	자체(용역) 개발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	
보안기능 점검표	○	○	○	
운용점검사항	○	○		
변경내용 분석서	○	○	○	업체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사업명		이메일 * 상용메일 불가	
	도입 목적			
	보안성 검토명		계약 날짜	
			도입 날짜	
검증결과 반영	취약점 등의 개선요청 이행 (<input type="checkbox"/> 반영·개선 <input type="checkbox"/> 반영불가)			
청 제 품	제품명	<small>* 신청 제품이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small>	S/W(펌웨어) 버전	
	제품 유형		도입 수량	대
	사전 인증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CC인증 대상 <input type="checkbox"/>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small>* CC인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제품은 국정원 홈페이지 참조</small>		
	해시값 (SHA-512)	<small>* △네트워크 장비일 경우, 기재 △해시값은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S/W 사용</small>		
	CC 인증기 관		CC 인증등 급	
	CC 인증번 호		CC 만료일	
	암호모듈명		암호검증 번호	CM-
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신청 제품이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 '검증결과 반영' 을 포함하여 기재 양식중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원격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상세화 등 상위지침인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관 인터넷망’, ‘상용 인터넷망’, ‘보안적합성 검증’ 등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새로 정의하거나 개정하여 명확히 함(제2조).
- 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준수사항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13조, 제26조 및 제28조의2).
- 다.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도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입현황을 분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별표 1).
- 라.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함(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별표 3).
- 마. 정보보안규칙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 근거 신설(제31조).
- 바.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 등록 시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0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7호” 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6호”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제8호, 제10호” 를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제9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표2” 를 “별표 2” 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2호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제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200,000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20. 10. 5.)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중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삭제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항목을 삭제함(제9조제1항 및 별표 2).
- 나. 그 밖에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례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함(제명, 제1조 및 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서 “일시적” 이라 함은 전시기간 30일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술관련 기관 및 연구 분야 등의 전문가를 통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 후보자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미술관련 기관 및 연구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7인 이내의 선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미술작품 심의신청) ①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주관기관은 위원회에 심의요청 전까지 공공미술 사업의 타당성을 관련 전문가·전문기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 시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자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재심의 신청 시 제1항의 서식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가 자문) 공공미술위원회는 공공미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여 심의 전 사업 자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공공미술위원회 심의방법) ① 공공미술위원회의 작품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미술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평가하여 최종승인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조건부승인 작품의 경우에는 설치 전 공공미술위원회에 조건이행 내

용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설치 또는 심의 승인된 미술작품의 설치위치 또는 작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각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방법)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작품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조례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사전에 안전을 검토한 후 본 심의에서 각 위원의 작품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미승인 작품의 경우 공개토론을 통해 재평가한 후 최종승인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작품의 경우 설치 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조건이행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여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례 제22조 단서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는 경우는 동일작가의 재심이상 신청작품에 한정한다.

제9조(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호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모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③ 공모절차, 공모기간, 소요경비 등 그 밖에 공모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및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또는 생애주기가 만료하였으나 관리되지 않는 작품에 대해 공공미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공공미술작품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작품을 등록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작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조례 제23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작품을 등록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조례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정기점검 및 보수처리 결과를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위촉 서약서(제3조제3항 관련)

(앞 쪽)

위원 위촉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

성명 :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위원 (서명)

(뒤 쪽)

위원 청렴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

성명 :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2. 본인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을 하지 아니하며, 불가피하게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 본인은 아래 준수사항의 제척·회피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부여된 회피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4. 본인은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준수 사항

- 1. (회피의무) ○○○위원회 위원은 아래 제척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작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본인이 이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나 단체가 제출된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
- 2. (보안의무) ○○○위원회 위원은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년 월 일

위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신청서

사 업 명			
주관기관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직급 성명 () ○ 확인자 : 직책 성명 ()		
사업주체	※ 별도 사업주체 있을 경우 기재		
사업추진 방법			
사전절차 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료	
기본계획 수립여부	<input type="checkbox"/> 수립 전	<input type="checkbox"/> 수립완료	
작가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완료	<input type="checkbox"/> 선정 전	
기획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체기획	<input type="checkbox"/> 기획자 선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추진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체추진	<input type="checkbox"/> 대행사 선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작가/작품 선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일반공모	<input type="checkbox"/> 지명공모	<input type="checkbox"/> 제안서평가
시민참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예산확보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 산	○ 전체예산 원 (설치비 원, 작가비 원, 기타)		
컨설팅 신청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자문요청 내용			
내 용			
*첨 부 ※ 해당 있을 경우 제출	1. 사업계획서 (서식 자유) 2. 사전절차 이행확인서 3. 내용의 타당성 결과, 장소의 적정성 결과 증빙서류 4. 토지 인허가 사항 증빙서류 5. 시민의견조사 결과 증빙서류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에 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신청서

사 업 명	
주관기관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직급 성명 (공) ○ 확인자 : 직책 성명 (공)
사업주체	※ 별도 사업주체 있을 경우 기재
재심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재심 (심, 제 차 공공미술위원회 안건)
위원회 자문 신청여부	<input type="checkbox"/> 자문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 자문결과 있을 경우 결과 제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교체,형상변경 <input type="checkbox"/> 철거,이전
작품구성	<input type="checkbox"/> 1점 <input type="checkbox"/> 기타 (점)
작품유형	※ 회화,조각,공예,서예,사진,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동상 등
작품/작가명	○ 작품명 : ○ 작가명: ※ 작품철거동의서 제출
사업내용	
사업기획	<input type="checkbox"/> 자체기획 <input type="checkbox"/> 기획자 선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추진	<input type="checkbox"/> 자체추진 <input type="checkbox"/> 대행사 선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작가/작품 선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일반공모 <input type="checkbox"/> 지명공모 <input type="checkbox"/> 제안서평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 산	○ 전체예산 (보조금/국비,시비 등)원 (설치비 원,작가비 원, 기타)
사업기간	○ 사업기간 : ○ 개막예정일:
*첨 부	1. 사전절차 이행확인서, 이행결과 주관부서 방침 2. 내용의 타당성 결과, 장소의 적정성 결과 증빙서류 3. 토지 인허가 사항 증빙서류 4. 관리기관 동의서 증빙서류 5. 시민의견조사 결과 증빙서류 6. 세부 사업계획서 (심의도서(PPT, PDF) 별도 송부) 7. 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결과서 8. 작품철거동의서 증빙서류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공공미술작품 설치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공공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 ○ ○
추진경위	○ ○ ○
사업내용	○ ○ ○
추진방법	○ ○
작품 대상자(※ 기념 대상이 있을 경우)	
성명(한자)	(생존 기간)
주요 업적	○ ○ ○
사업(전시, 작품설치) 계획 ※(사업성격에 맞게 변경 가능)	
설치 장소	※ 해당작품 설치 관련 인허가 및 주변상황(전기선, 통신선 등) 확인
설치 기간	
설치 방법	※ 좌대 설치여부, 재질 등 구체적 명시
작품 크기 (규모/무게)	
작품 재료	※ 좌대포함 작품 재질 등 구체적 명시

<p>제작 방식</p>	<p>※ 조명기구 · 형태 및 조명위치 등</p>
<p>작품 설명문</p>	
	<p><원거리 도면></p>
<p>설치 위치</p>	<p><근거리 도면></p>
	<p><작품설치 주변 사진></p>

<p>작품 시안</p>	<p><정면, 배면, 좌·우측면, 투시도,(근경/원경)></p>
<p>작품 설명판 시안</p>	
<p>작가 소개</p>	<p>○ ○ ○ ※ 주요 전시경력(이미지 포함) 등</p>
<p>자문내용</p>	<p>※해당 있을 경우</p>
<p>변경내용</p>	<p>※조건부 승인 경우</p>

사후 관리계획	
관리책임자	※관리부서, 관리담당
예산 편성계획	
연간 관리 및 점검 계획	○ ○
유지보수 계획	○ ○
유지보수 방법	○ ○
생애주기	○ ○
작품철거 동의서	※ 작품 저작권자와의 사전 동의 사항 등

[별지 제6호서식] 공공미술작품 철거·이전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공공미술작품 철거·이전계획서

설치 작품 개요	
작 품 명	
설치 기관 (주체)	
설치 일자	
설치 장소	
제작 방식	
규모/무게	
설치 경위 (목적)	○ ○ ○
작품 소개	○ ○ ○
설치 작품 사진	

철거·이전 등 계획	
철거(이전) 기관(주체)	
관련기관 의견	○ ○ ○
철거(이전) 장소 인근 주민 의견	○ ○ ○ ○
철거(이전) 목적	○ ○ ○
철거(이전) 사유	○ ○ ○
철거(이전) 방법	
추진일정 (향후계획)	○ ○
기 타	※ 작품 저작권자와의 사전 동의 등
사후 계획	
철거(이전)시 작품 처리 방법	
기 타	

[별지 제7호서식] 공공미술위원회 심의평가표(제6조제1항 관련)

공공미술위원회 심의평가표

평가 기준	평가 의견
1. 장소의 적정성 ◦대상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맥락들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는지 여부 ◦공공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후·재료 검토 반영 여부	
2. 작품의 예술성 ◦조형미, 형식미 등 미술작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품격, 예술성 등 포함 여부 ◦재질, 규격, 제작방법 등의 적절성	
3. 공공성 및 안전성 ◦공공공간에 설치되기에 적합한 내용, 형식 및 대중과의 소통성, 장소 접근성 등 ◦공공장소 설치의 안전 적합성, 도시미관에 기여여부	
4. 관계성 · 소통성 ◦시민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작품인지 여부 등 (시민 공감도 등) ◦시민환기와 향유가 가능한 작품인지 여부 등	
5. 사후관리계획 및 철거계획 ◦설치주체 및 관리기관의 역할 분담, 보수처리 등 ◦작품생애 주기 감안한 철거기한 명시	
6. 기타 ◦작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여부	
평가 결과	

년 월 일

위원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제7조제1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건축허가 일 자		설계변경 허가일자		사용승인 예 정 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점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설치가액	원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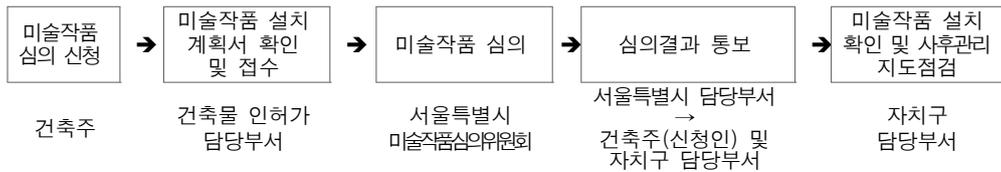
※ 첨부서류 포함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 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나.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작성내용
 -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 (5) 그 밖에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 경력서(별지서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2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설치위치, 설명 등을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부
 -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 (1) 건축개요
 - (2) 주위현황도
 - (3) 건축물투시도
 - (4)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도 추가(식재종류, 수량 등 포함)
 - (5) 미술작품개요
 -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 (7)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배·좌·우·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 (8) 작품설명판(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설명내용 등 표시, 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 (10)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유지보존계획서(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11) 작가경력 및 작품경력 사항(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나. 심의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2) 작가의 성명이나 소속,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 (3)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표지 하단에 심의일자·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표기하고, 심의도서 내에는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 및 보완 또는 조치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할 것
 -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하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과 일치된 근경을 작성하고(조경계획에 없는 식재를 표기하지 말 것),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규격·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해당 시) 등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 (6) 좌대를 포함한 작품높이 5m 초과 또는 구조검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조검토 요약 내용을 심의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구조검토서 사본 별도 제출)
 - (7) 실내에 설치하는 작품은 작품도면에 작품 주변의 마감재 및 바닥재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표기할 것
 - (8) 작품설명판은 설명이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CD 또는 USB 1부

건축물 미술작품 처리절차



[별지 제9호서식] 작가경력서(제4조제1항, 제7조제3항 관련)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2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대행인 경력서(제4조제1항, 제7조제3항 관련)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 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 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제7조제3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

위치	
----	--

건축주	
-----	--

건축물 연면적	총 연면적		m ²	
	구분			
	공용도별연면적		m ²	
	미술작품 설치대상연면적		m ²	
	미술작품 제 외시설면적	소계	m ²	m ²
		주차장	m ²	m ²
		기계실	m ²	m ²
		전기실	m ²	m ²
		변전실	m ²	m ²
		발전실	m ²	m ²
공기조화실		m ²	m ²	
기타	m ²	m ²		

미술작품 설치비용	공동주택	① 설치대상연면적 m ²	② 표준건축비 원	③ 적용요율 %	계 (①×②×③) 원
	공동 주택 외	① 설치대상연면적 m ²	② 표준건축비 원	③ 적용요율 %	계 (①×②×③) 원
	합계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	---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1.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1/1000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가. 설치대상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설치대상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나. 설치대상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제7조제3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조각)

신청번호	신청일자
-------------	-------------

작가명	
-----	--

미술 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구 분		금액(원)	비율(%)	비 고
	사용금 액 내역	창작비	작가창작비 (Artist Fee)		
제작비			재료비		
		인건비			
		기타			
설치비		작품 운반비			
		현장 설치비			
		기초구조물 및 부대공사비			
대리인 지급대가		대행수수료			
행정비용		심의도서 제작비			
		모형 제작비			
		기타			
기타비용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비용			
합계			원	100%	

유의사항

1.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2. 제작비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등을 통한 인건비를 포함하며, 재료비는 필요한 경우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설치비는 작품 운반비, 현장 설치비,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부대공사비로 세분합니다.
4. 대리인 지급대가는 작가가 대행인을 선정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5.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도서 제작비, 모형 제작비 등을 포함합니다.
6. 기타 비용에는 보험료가 포함되며, 기타 필요한 비용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제7조제3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회화 등)

신청번호	신청일자
------	------

작가명	
-----	--

미술 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구 분		금액(원)	비율(%)	비 고	
	사용금액 내역	창작비	작가창작비 (Artist Fee)			
제작비			재료비			
		기타				
설치비		작품 운반비				
		현장 설치비				
대리인 지급대가		대행수수료				
행정비용		심의도서 제작비				
		기타				
기타비용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비용				
합계			원	100%		

유의사항

1. 제작비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재료비는 필요한 경우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설치비는 작품 운반비, 현장 설치비로 세분합니다.
3. 대리인 지급대가는 작가가 대행인을 선정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 금액의 20%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4.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도서 제작비 등을 포함합니다.
5. 기타 비용에는 보험료가 포함되며, 기타 필요한 비용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작품 등)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예정)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작품 등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술작품 개요	변경 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미술작품 개요	변경 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점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가액	원	설치일(또는 설치예정일)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미술작품 개요	변경 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점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가액	원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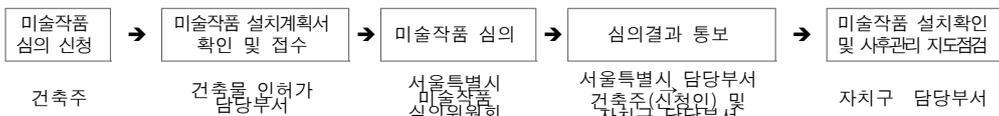
※ 첨부서류 포함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작품 등)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나.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작성내용
 -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서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2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설치위치, 설명 등을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부
 -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 (1) 건축개요
 - (2) 주위현황도
 - (3) 건축물투시도
 - (4)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도 추가(식재종류, 수량 등 포함)
 - (5) 미술작품개요
 -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 (7)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배·좌·우·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 (8) 작품설명판(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설명내용 등 표시, 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 (10)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유지보존계획서(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11) 작가경력 및 작품경력 사항(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나. 심의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2) 작가의 성명이나 소속,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 (3)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표지 하단에 심의일자·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표기하고, 심의도서 내에는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 및 보완 또는 조치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할 것
 -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하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과 일치된 근경을 작성하고(조경계획에 없는 식재를 표기하지 말 것),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규격·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해당 시) 등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 (6) 좌대를 포함한 작품높이 5m 초과 또는 구조검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조검토 요약 내용을 심의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구조검토서 사본 별도 제출)
 - (7) 실내에 설치하는 작품은 작품도면에 작품 주변의 마감재 및 바닥재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표기할 것
 - (8) 작품설명판은 설명이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CD 또는 USB 1부

건축물 미술작품 처리절차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설치위치)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예정)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위치변경 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대상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변경작품수	점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작가동의여부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심의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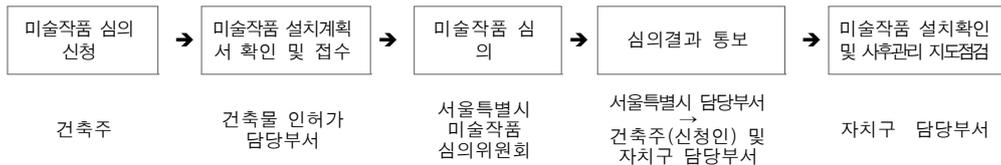
※ 첨부서류 포함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설치위치)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위치변경 심의도서 1부
 -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 (1) 건축개요
 - (2) 주위현황도
 - (3) 건축물투시도(건축물 전경 실사사진 가능)
 - (4) 변경사유 및 변경위치
 - (5) 건축물배치도(변경 전, 후 위치 표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도 추가(식재종류, 수량 등 포함)
 - (6) 미술작품개요
 - (7)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 (8)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배·좌·우·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 (9) 위치변경 후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 나. 심의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2) 심의도서 표지 하단에는 심의일자·변경사유를 표기하고, 심의도서 내에는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 (3)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하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과 일치된 근경을 작성하고(조경계획에 없는 식재를 표기하지 말 것),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4) 실내에 설치하는 작품은 작품도면에 작품 주변의 마감재 및 바닥재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표기할 것
3. 미술작품 위치변경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CD 또는 USB 1부

건축물 미술작품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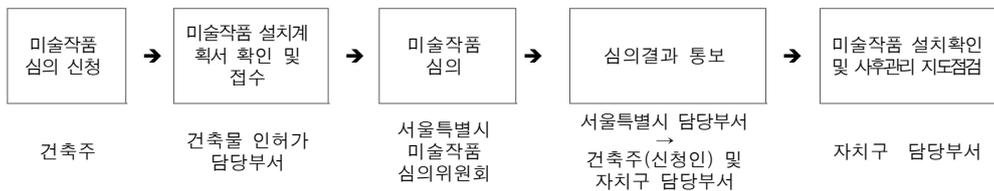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서식)
3. 미술작품 공모에 필요한 도서 1부
 - 가. 건축물 개요
 - (1) 건축개요
 - (2) 대지위치도
 - (3) 주위현황도
 - (4) 건축물투시도 또는 조감도
 - 나. 미술작품 공모개요(작품별로 작성)
 - (1) 건축물배치도(작품설치 예정위치 표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도 추가(식재종류, 수량 등 포함)
 - (2) 작품설치 예정위치 상세도(작품설치 요구면적 또는 규모 표기, 인공지반 상부에 배치 시 허용하중 표기)
 - (3) 작품주제 및 개념 등 세부 요구사항
3. 기타 미술작품 공모에 필요한 자료 1부

건축물 미술작품 처리절차



작품사진 및 작품 세부상태 사진	작품위치(지도 - GPS 좌표 또는 상세주소 포함)	작품설명판(확대)
	정면	작품후면
	작품측면(좌)	작품측면(우)

	경관(주변환경 포함)		경관(주변환경 포함)		
	관리기관 (부서)		작성자		확인자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제11조제4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앞 쪽)

관리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건축물	위치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m ²	용도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설치형태	총설치수 점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설치금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세부위치	작품명	작가명	연락처	비고

(뒤 쪽)				
작	품	내	용	(정면사진)
작 품 명				
작 품 종 류 (분 류)				
규 격				
재 료				
금 액				
<사진촬영 시 유의사항> ※ 원경, 근경, 정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작품 설명판 사진을 모두 촬영하여 작성할 것 ※ 작품 설치 및 작품 주변의 정리정돈(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작성할 것				
(원경사진)		(근경사진)		
(좌측면 사진)		(우측면 사진)		

(뒤 쪽)	
(후면 사진)	(작품설명판 사진)
(기타 특징부 또는 작품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진 추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0.10.5. 공포, 2021.4.5. 시행)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만족도 제고 및 공공미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미술 심의 예외대상인 ‘일시적인 설치’에 대한 기준을 ‘30일 미만’으로 구체화함(제2조).
- 나.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위촉 시 전문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구성하도록 함(제3조).
- 다. 공공미술위원회의 공공미술작품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공공미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1조).
 - (1) 생애기간이 만료된 작품 및 무단 설치된 작품에 대해 조치하도록 규정함
 - (2) 공공미술을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2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원받
자 하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시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④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수급자(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관련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⑤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제6조제1항” 을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생활지원금 및” 을 “생활지원금,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지급 결정 통지서

지급구분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민주화운동명예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제비	
관 련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구 분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부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 계			
	주 소	()				
비대상 결정사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동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20. 12. 31.)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급금액·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련자는 신청서 및 관련자 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 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제3조제3항).
- 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자가 사망,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관련자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제3조제4항 및 제5항).
- 라. 규칙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정함(부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3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를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으로,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를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참석하는 경우에는” 을 “회의에 참석하고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위원의 추가선정을 의무화함(제3조제4항).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제척·회피 사유를 구분하고 기피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조).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평가위원 참석 기준을 강화함(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4호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계관리 규칙 제21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1조”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회계관리 규칙 제22조제3항”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관리 규칙 제22조제2항”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2항”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관리 규칙”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계관리 규칙 제32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회계관리 규칙 제33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3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계관리 규칙 제37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7조”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회계관리 규칙 제43조제2항”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3조제2항” 으로 한다.

제16조 중 “회계관리 규칙 제49조제2항”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9조제2항” 으로 한다.

제18조 중 “회계관리 규칙 제52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52조”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의2서식부터 제12호의8서식 및 제13호의3서식” 을 “별지 제13호의3서식 및 제13호의4서식” 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회계관리 규칙 제77조제2항”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2항” 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을 “(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기준)” 으로 한다.

제22조 중 “회계관리 규칙 제89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89조” 로 한다.

제24조 중 “회계관리 규칙 제103조제1항”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제1항” 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회계관리 규칙 제156조의2제1항”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56조의2제1항” 으로 한다.

제26조 중 “회계관리 규칙 제114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4조”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회계관리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으로, “회계관리 규칙 별표 6” 을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7” 로 한다.

제40조 중 “회계관리 규칙 제131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31조” 로 한다.

제41조 중 “회계관리 규칙 제132조” 를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32조” 로 한다.

별표 3 중 “지방자치 단체재무회계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2호의6, 제12호의7, 제12호의8, 제13호 및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1. 공사란, 12. 설계·공사·감리용역란 및 13. 물건의 제조·구매·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란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 21.1.1. 시행)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 전면 도입으로 행정안전부 공통 서식 사용에 따라 우리시 자체 서식을 삭제함(10종).

(1)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된 지출결의서 서식을 삭제함(별지 제12호서식).

(2) 지출과 관련된 품의 서식이 일반 기안문으로 대체됨에 따라 불필요한 품의서 서식 9종을 삭제함(별지 제1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다. 규칙의 제명 변경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등 17개 규칙에서 인용하는 규칙의 제명을 부칙으로 정비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5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14조 중 “균등분” 을 “개인분” 로,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16조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법 제83조제4항” 을 “법 제83조제6항” 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개인사업자, 법인 여부)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개인사업자, 법인 여부)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면 적	세 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 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사항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함(제6장제1절 제목, 제6장제2절 제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제1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6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 을 “위원” 으 로, “위촉하는 자로 한다” 를 “위촉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 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3.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인
- 4.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6. 그 밖의 회계 및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청인 증명서류
 - 가.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	181,000	423,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	110,000	244,000		
	제1·2 수영장	09:00-18:00	804,000	1,206,000	1,548,000	
		09:00-12:00	268,000	402,000	516,000	
		12:00-18:00	680,000	1,020,000	1,341,000	
	야구장	221,000	331,000	530,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	774,000	1,252,0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	222,000	355,000		
	체조관	41,000	62,000	138,0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				
풋살구장(2시간)	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	857,000	1,267,000		
	보조경기장(2시간)	197,000	295,000	472,0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광장(4시간, m ² 당)	21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 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A2			77,800	
A3		63,400				
A4		61,800				
A5		45,600				
서남권 돔구장	야 구 장		224,000	336,000	538,000	
	축구장	1일	155,000	232,000	372,000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2시간	51,000	77,000			
	수영장	09:00 - 18:00	489,000	735,000	942,000	
		09:00 - 12:00	163,000	245,000	314,000	
		12:00 - 18:00	413,000	621,000	816,000	
	보행광장 (4시간, m ²)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불펜 (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수하지 아니한다.)			
국민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5,000	188,000	302,000	
		2시간	50,000	75,000		
	야구장	1일	111,000	167,000	466,000	
		3시간	66,000	100,000		
	실내빙상장		102,000 (1시간)	153,000 (1시간)	7,331,000	110,000 (1시간)
	다목적구장		89,000			
효창운동장		1일	125,000	187,000	300,000	
		2시간	50,000	74,000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129,000	193,000	451,0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	60,000	79,800	
	다목적실(3시간)		12,000	31,200	37,200	
독섬승마훈련원		120,000	180,000	288,0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	173,000	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			
	다목적실		352,000			
	시청각실		232,0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7.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전용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제10조제1항).
- 나.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 신원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변경함(제1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 다.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함(별표 2).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토지 내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0조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 조례 제30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공원관리청은 계약 대
상인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계약 위치 및 면적, 계약 목적 및 내용,
계약기간 등을 시보 또는 구보에 14일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 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다. 토지의 개방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3.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체결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별표 5]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
<p>공원시설 등의 설치</p>	<p>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자연 상태를 유지, 수림이 양호하지 않은 곳은 수목 식재 및 화단 조성(개·보수 포함) 2.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최소한의 도시공원 이용 편의시설 3.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도시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한 시설 4. 공원부지사용계약 및 공원이용 안내판
<p>공원시설 등의 관리</p>	<p>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공원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 라 정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을 “공원관리청”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서울특별시 ○○구 ○○동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 (무상사용인 경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 (유상사용인 경우) “공원관리청” 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 에게 지급한다.

제5조(부지사용료 지급방법) 부지사용료는 최초 입금일은 ○○○○년 ○○월 ○○일로 하고, 계약 후 1년 단위(1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토지소유자” 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계약서에 본조 삭제).

부지사용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6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8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9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10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부지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본조 삭제).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2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5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준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토지의 공원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 내에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제13조 및 별표 5 신설).

나.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을 신설함(제14조 및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 서울특별시규칙 제4418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1년 4월 6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 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

- 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6.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7.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8.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이수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별로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권익조사관(여성권익담당관):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직원, 기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인 경우
2. 시민인권보호관(인권담당관): 제1호를 제외한 경우

② 권익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권익조사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권익조사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 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권익조사관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⑥ 권익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⑧ 권익조사관은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 ⑨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⑩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된 서울특별시 공무원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내부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⑪ 조사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3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시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치료와 보호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구성원에 대해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④ 고충상담원, 권익조사관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감사 또는 인사부서에서 직무상 관련 사항을 인지한 경우 권익조사관에게 알리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등)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3조제3호 다목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후에는 당사자에게 서면, 온라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권익조사관 채용 전까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관한 조사 업무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요 청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_____				
작성 자 : _____				
확 인 자 : _____				

[별지 제4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남, 여)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의 및 적용범위(제2조 및 제3조).
- 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상급자·구성원의 책무(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제7조).
- 라.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사건의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조사결과의 통지 및 공개(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2조).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